보세사 실전예상문제집

편저자 : 신 호 근

※ 정오 및 오탈자를 수정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양서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p.10 5번 문제-③번 지문	③ 가,다.라	③ 나,다,라
▶p.17 18번 문제 정답	©	•
▶p.26 9번 문제 정답	•	②
▶p.28 14번 문제-②번 지문	② 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될 때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 국물품 이 멸실 또는 폐기될 때
▶p.31 17번 문제 -구분	과세물건 확정시기	소멸시효 기산일
▶p.34 21번 문제—⑤번 지문	⑤ 우편물은 가산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⑤ 우편물은 가산금 부과대상이다.
▶p.37 27번 문제─해설	확정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이 변경할 때 이를 "경쟁"이라 한다.	P.28 문제 13번 해설 참조
▶p.38 30번 문제-해설	~ 종량세, 그리고 가세~	~종량세 그리고 <u>종가세</u> ~
▶p.38 30번 문제-정답	(4)	3
▶p.40 33번 문제─정답	(6
▶p.42 39번 문제─정답	3	6
▶p.42 39번 문제─③번 지문	③ 계약과 상이한~	③ 계약 <u>내용</u> 과 상이한~
▶p.42 40번 문제─④번 지문	④ ~효력이 유지된다.	④ ~효력이 없다.
▶p.43 42번 문제-정답	6	•
▶p.43 42번 문제—④번 지문	④ 제1방법에서~	④ 제6방법은 제1방법에서~
▶p.44 43번 문제─정답	6	(4)
▶p.46 49번 문제─해설	~ "가,나,다,마"~	~ " 가, 나, 라, 마 " ~
▶p.49 55번 문제─③번 지문	~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 ~	~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

보세사 실전예상문제집

▶p.49 55번 문제─ 해설전면교체	제39조(부과고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12.31〉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p.54 2번 문제 문제와 지문사이 삽입	· 최초수입신고가격 : ₩1,000,000 · 수출신고가격 : ₩900,000 ·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 · 보험료 : ₩10,000 ·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 · 보험료 : ₩100,000 · 국내 수입항에서 A사 공장까지의 운임 · 보험료 : ₩100,000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 8%		
▶p.55 4번 문제-정답	©	3	
▶p.63 7번 문제-⑤번 지문	⑤ ~ 과세전적부심사 ~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p.66 1번 문제-정답	3	(4)	
▶p.71 9번 문제-정답	3	(5)	
▶p.80 24번 문제─정답	•	3	
▶p.104 18번 문제─해설	" 라. " 지문 삭제		
▶p.107 24번 문제─⑤번 지문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20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5년 이내로 한다.	
▶p.111 33번 문제─ 해설전면교체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 4. 특허가 취소된 경우		

보세사 실전예상문제집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15조(공동보세구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 보세구역을 특허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수출입업체가 공동으로 자가화물을 보관하려는 경우 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이 수입하는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는 경우 3.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회원사의 수입원자재를 수입하여 보관하려는 경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입주업체의 수입품을 일괄하여 보관하는 경우 5. 관광산업진흥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주)한국관광호텔용품센타가 회원사에 공급할 물품을 일괄 수입하여 보관하는 경우 6.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보관·비축시설에 관련 업체의 수입물품을 일괄 보관하는 경우 ② 공동보세구역으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화물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과 관리조직등을 사전에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4	•
항선사~	운항선사~
3	2
(4)	3
4	6
⑤	3
©	(5)
6	3
⑤	@
4	(S)
3,4	3
6	•
	제15조(공동보세구역)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택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수출입업체가 공동으로 자가화물을 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이 수입하는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는 경 3.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소기업험동조합에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일괄하여 보관하는 경우 5. 관광산업진흥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주)한국관하여 보관하는 경우 6.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보관ㆍ비를 2 공동보세구역으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화사전에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④ ③ ④ ⑤ ② ⑤ ⑤ ⑤ ⑤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